

의안번호	제 45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6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458
----------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24일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준용 규정 개정 및 청원의 불수리 사항 명확화, 소개의원 취지설명 요구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감 소관 사항의 명문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원 불수리 사항 개정(안 제4조)
 -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등에 따른 관련 불수리 사항 개정
-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를 들을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7조)
 - 위원회 → 본회의 또는 위원회
- 청원 처리기관 명확화(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도지사 → 도지사 또는 교육감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안 제17조)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청원자 → 청원인, 자 → 사람 등

3.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를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을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

제6조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를 각각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청원사항과 직접 이해가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17조 중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의2(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u> 이 규칙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p> <p><u>제2조(청원서의 제출)</u>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청원서에는 <u>청원자의</u>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u>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u> <u>의회의장</u>(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u>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u>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u>제2조(청원서의 제출)</u> ① ----- ----- <u>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u>은 <u>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의 -----.</p> <p>② ----- <u>청원인의</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u> <u>충청북도</u> <u>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은 ----- ----- ----- -----.</p> <p><u>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u> ----- ----- ----- ----- -----.</p>

현행	개정안
<p>1. <u>재판에 간섭하는 것</u></p> <p>2. <u>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u></p> <p>3. <u>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u></p> <p>4. <u>법령에 위배되는 것</u></p> <p>5. (신설)</p> <p>6. (신설)</p> <p>7. (신설)</p>	<p>1. <u>법령에 위배되는 것</u></p> <p>2. <u>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u></p> <p>3. <u>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경우</u></p> <p>4. <u>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u></p> <p>5. <u>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u></p> <p>6. <u>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u></p> <p>7. <u>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u></p>
<p>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p> <p>① (생략)</p> <p>② 청원요지서에는 <u>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위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u>을 기재한다.</p> <p>③·④ (생략)</p>	<p>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청원인의</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소개위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u>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u></p>	<p>제7조(소개위원의 취지설명) ----- ----- <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u> ----- -- <u>본회의 또는 위원회에</u> ----- -----.</p>

현행	개정안
<p>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u>자로부터</u>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 ----- ----- --- <u>사람으로부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제척과 회피) ① <u>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u>의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u></p> <p>④ (생략)</p>	<p>제9조(제척과 회피) ① <u>의원은 청원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심사보고) ① (생략)</p> <p>② (생략)</p> <p>1. <u>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u></p> <p>2. (생략)</p>	<p>제11조(심사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u> -----</p> <p>2. (현행과 같음)</p>
<p>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u>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u></p> <p>② <u>도지사는</u>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 <u>도지사 또는 교육감이</u> ----- ----- ----- <u>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u> ----- -----.</p> <p>② <u>도지사 또는 교육감은</u> -----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p> <p>1. ~ 3. (생략)</p> <p>4. <u>도지사에게</u>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는 때</p> <p>5. (생략)</p>	<p>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u> ----- -----</p> <p>5. (현행과 같음)</p>
<p>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u>」와 「<u>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7조(준용규정) ----- ----- ----- 「<u>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u>」와 ----- -----.</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